『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공모(변경)지침서』

오기사항 정정

2021. 4

ifez 인천경제자유구역청
http://www.ifez.go.kr

『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공모(변경)지침서』 오기 사항(건폐율) 정정

◇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2021-20호(2021.1.29.)로 공고한 상기 공모지침서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와 상이하게 기재된 오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<제4조(사업부지)제①항제3호,(변경안)>

용지명	면적(㎡) 건폐율/용적율	주요 도입시설	허용 및 불허 용도
준공업지역 산업시설용지 (70%)	183,144㎡ 60%/400%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준주거지역 지원시설용지 (30%)	78,490㎡ 70%/500%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<제4조(사업부지)제①항제3호,(변경안)>의 오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정정 전		정정 후	
용지명	면적(㎡) 건폐율/ 용적율	용지명	면적(㎡) 건폐율/ 용적율
준공업지역 산업시설용지 (70%)	183,144㎡ 60%/400%	준공업지역 산업시설용지 (70%)	183,144㎡ **70%**/400%
준주거지역 지원시설용지 (30%)	78,490㎡ 70%/500%	준주거지역 지원시설용지 (30%)	78,490㎡ **60%**/500%

※ 사업제안서 작성시 2021년 3월 12일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인천시도시계획조례(별표 포함)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.